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. 7월 시행되는 조직 개편사항과 복지, 주민 건강 증진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  - '1,387'을 '1,402'로 개정(증 15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'1,360'을 '1,375'로 개정(증 15명)
-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  - 총계 '1,387'을 '1,402'로 개정(증 15명)
  - 일반직 총계 '1,382'를 '1,397'로 개정(증 15명)

- 일반직 4급 총계 '7'을 '8'로, 4급 본청 '6'을 '7'로 개정(증 1명)
- 일반직 5급 총계 '62'를 '64'로, 5급 본청 '31'을 '33'으로 개정(증 2명)
- 일반직 6급 이하 '1,310'을 '1,322'로 개정(증 12명)

직급별		기관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		1,402	1,402			
정무직			1	1			
일반직 계			1,397	1,397			
일반직	3급		1	1	-	-	-
	4급		8	6	1	1	-
	5급		64	33	2	11	18
	6급 이하		1,322	1,322			
	전문경력관		2	2			
별정직 계			4	4			
6급 상당 이하			4	4		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신설되는 국과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,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,
- 개정안의 주요내용(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 참조)을 살펴보면,

#### ※ 직급별 세부 증원내용

직급	증원	증원 필요성	
계	15명		
4급	1명	○ 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른 증원	
5급	2명	○ 2개 부서 증가에 따른 증원 : 기획담당관, 도시재생과	
6급 이하	12명	부서 신설	○ 기획담당관, 도시재생과 4명
		국가 정책	○ 저출산 대응체계 : 1명 ○ 지역공동체 사업 : 1명 ○ 사회복지 분야 : 2명
		주요 사업	○ 지역건강증진 사업 : 3명 ○ 녹지사업 : 1명

- 안 제2조,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는 현재1,387명에서 1,40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 인건비 1,217억원

내에서 15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,

- 안 제4조 “별표3”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, 일반직의 4급 1명, 5급 2명, 6급이하 12명 등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- 이는,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신설되는 생활환경국과, 기획담당관, 도시 재생과 등 신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, 4급 1명, 5급 2명, 6급이하 4명 등 7명을 증원하는 것이며,
- 그밖에 정부의 시책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1명, 지역공동체 사업 1명, 사회복지 분야 2명, 지역건강증진사업 3명, 녹지사업 1명 등 8명을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보임.

○ 위와 관련하여, 2017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,217억원이고, 예산 편성액은 1,148억원임을 감안할때, 신규 증원되는 15명의 인건비는 연간 7억 8백만원으로, 향후,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(※ ‘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’ 참조)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 불 임 】

##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

□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: 121,700,397천원

□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: 114,895,871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
총 계	114,895,871
101 인건비	91,970,524
101-01 보수	73,482,627
101-02 기타직보수	5,270,292
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13,217,605
204 직무수행경비	2,468,700
204-02 직급보조비	2,468,700
303 포상금	4,156,659
303-02 성과상여금	4,156,659
304 연금부담금등	16,299,988
304-01 연금부담금	13,596,757
304-02 국민건강보험금	2,703,231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따라 2017.7월 시행되는 조직 개편사항과 복지, 주민 건강 증진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- '1,387'을 '1,402'로 개정(증 15명)
- 집행기관의 정원 : '1,360'을 '1,375'로 개정(증 15명)

### 나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
- 총계 '1,387'을 '1,402'로 개정(증 15명)
- 일반직 총계 '1,382'를 '1,397'로 개정(증 15명)
- 일반직 4급 총계 '7'을 '8'로, 4급 본청 '5'를 '6'으로 개정(증 1명)
- 일반직 5급 총계 '62'를 '64'로, 5급 본청 '31'을 '33'으로 개정(증 2명)
- 일반직 6급 이하 '1,310'을 '1,322'로 개정(증 12명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규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, 제29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

○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(1년 소요예산)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재원	비고
4급 1명, 5급 2명 6급 이하 12명	708	구비 706	구비 99.7%

다. 합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3) 인권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7.4.20. ~ 2017.5.1., 11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의 규정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387명”을 “1,402명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60명”을 “1,37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		총 계	1,402	1,402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397	1,397			
일 반 직	3급	1	1	-	-	-
	4급	8	6	1	1	-
	5급	64	33	2	11	18
	6급 이하	1,322	1,322			
	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387명</u>으로 하고 다음 <u>각호</u>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60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3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402명</u> ----- <u>각 호</u>----- -.</p> <p>1. ----- <u>1,375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조례 제4조 [별표 3]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
<b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</b>							<b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</b>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
총 계	1,387	1,387						총 계	1,402	1,402				
정무직	1	1						정무직	1	1				
일반직 계	1,382	1,382						일반직 계	1,397	1,397				
일 반 직	3급	1	1				3급	1	1					
	4급	7	5	1	1		4급	8	6	1	1			
	5급	62	31	2	11	18	5급	64	33	2	11	18		
	6급이하 소계	1,310	1,310					6급이하 소계	1,322	1,322				
	전문 경력관 소계	2	2					전문 경력관 소계	2	2				
별정직 계	4	4						별정직 계	4	4				
6급 상당 이하	4	4						6급 상당 이하	4	4				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 : 세출예산 순증가 (인건비)
  - 정원조례 제2조 : 정원의 총수는 '1,387명'을 '1,402명'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'1,360명'을 '1,375명'으로 한다
2. 비용추계 기준 : 일반직 인건비
  - 채용인원 : 15명(4급 1명, 5급 2명, 7급 1명, 8급 4명, 9급 7명)
  - 비용추계기간 : 12개월(2017.1.~12월)
  - 비용추계내역 : 기본급+직급보조비+국민건강보험금+연금부담금+수당
3.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근 거
합 계	708,277	
기본급(봉급)	468,164	4급, 5급 연봉 상한액 6급 이하는 각 직급 3호봉 기준
직급보조비	28,980	2,415,000원×12월= 28,980천원
국민건강 보험금	9,826	국민건강보험금 9,826천원
연금부담금 등	51,920	연금부담금 등 51,920천원
수 당	149,387	- 가족수당 5,328천원 - 정근수당 9,319천원 - 시간외근무수당 71,514천원 - 정액급식비 23,400천원 - 명절휴가비 23,296천원 - 연가보상비 11,130천원 - 기술업무수당 5,400천원

4.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구비	708,277	736,608	766,072	796,715	828,584	3,836,256
	소계(a)						
세출	인건비(보수)	646,531	672,392	699,288	727,259	756,350	3,501,820
	보험료+연금 (사용자분)	61,746	64,216	66,784	69,456	72,234	334,436
	소계(b)	708,277	736,608	766,072	796,715	828,584	3,836,256
□ 총 비용(a-b)							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국비		1,650	1,716	1,785	1,856	1,930	8,937
시비	지방세수입	825	858	892	928	965	4,468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(구비)		705,800	716,134	744,780	774,571	805,555	3,746,840
합계		708,277	736,608	766,072	796,715	828,584	3,836,256

6. 추가의견

- 사회복지직 증원은 국·시비가 75% 구비 25%임.
- 기타 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구비로 정원 충원임
-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증가하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이 필요함.

7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국 총무과 이정왜
연 락 처	02-2670-3323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